

| | |
|--------------|----------------|
| 의안번호 | 제 972 호 |
| 의 결 연 월 일 | 년 월 일 (제 회) |

충청북도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
|-------|--------------|
| 발 의 자 | 이옥규 의원 등 8인 |
| 발의연월일 | 2022년 1월 10일 |

충청북도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옥규 의원 대표발의)

| | |
|----------|-----|
| 의안 번호 | 972 |
|----------|-----|

발의연월일 : 2022년 1월 10일

발 의 자 : 이옥규, 임영은, 박상돈,
심기보, 오영탁, 육미선,
김국기, 원갑희

1. 개정이유

- 관계법령 인용조문을 정비하고,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용어를 변경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관계법령 인용조문 정비
 - 영 제53조의6제1항 → 영 제53조의5제1항(안 제4조제1항)
 - 영 제53조의6제2항제2호 → 영 제53조의5제2항제2호(안 제6조제3항)
 - 영 제53조의5제1항 → 영 제53조의2제1항(안 제7조제3항)
-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
 - 관하여 필요한 → 관한(안 제1조)
 - 한하여 → 한정하여, 보궐위원 → 새로 위촉된 위원(안 제8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나. 관련부서 협의 : 문화체육관광국 건축문화과와 협의함.

다.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라. 입법예고 : 관계없음.

충청북도조례 제 호

충청북도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그 밖에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을 “그 밖의 사항에 관한”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영 제53조의6제1항”을 “영 제53조의5제1항”으로 한다.

제6조제3항 전단 중 “영 제53조의6제2항제2호”를 “영 제53조의5제2항 제2호”로 한다.

제7조제3항 중 “영 제53조의5제1항”을 “영 제53조의2제1항”으로 한다.

제8조 중 “한하여”를 “한정하여”로, “보궐위원”을 “새로 위촉된 위원”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택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u>그 밖에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u></p> |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택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u>그 밖의 사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u></p> |
| <p>제4조(점검대상) ① 「주택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u>제53조의6제1항에</u> 따른 점검대상은 다음 각 호로 한다. 다만, 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사업주체인 경우는 제외한다.</p> <p style="padding-left: 2em;">1.~2. (생략)</p> <p>② (생략)</p> | <p>제4조(점검대상) ① 「주택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u>제53조의5제1항에</u> 따른 점검대상은 다음 각 호로 한다. 다만, 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사업주체인 경우는 제외한다.</p> <p style="padding-left: 2em;">1.~2. (현행과 같음)</p> <p>② (현행과 같음)</p> |
| <p>제6조(점검시기·절차) ①·② (생략)</p> <p>③ 제2항에 따라 점검계획을 통보받은 사용검사권자는 <u>영 제53조의6제2항제2호에</u> 따른 세대의 전유부분 점검을 위해 최소 5세대 이상을 선정하여 품질점검단에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구체적인 점검 세대수 및</p> | <p>제6조(점검시기·절차) ①·② (현행과 같음)</p> <p>③ 제2항에 따라 점검계획을 통보받은 사용검사권자는 <u>영 제53조의5제2항제2호에</u> 따른 세대의 전유부분 점검을 위해 최소 5세대 이상을 선정하여 품질점검단에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구체적인 점검 세대수 및</p> |

| 현 행 | 개 정 안 |
|--|--|
| <p>세대 선정기준은 공동주택의 규모 등 단지 여건에 따라 정한다.</p> <p>제7조(점검결과·조치) ①·② (생략)</p> <p>③ 사용검사권자는 품질점검단의 점검결과 및 제2항에 따라 사업주체로부터 제출받은 의견을 검토하여 <u>영 제53조의5제1항</u>에 따른 하자의 범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해 사업주체로부터 의견을 제출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사업주체에게 보수·보강 등의 조치를 명해야 한다.</p> <p>제8조(임기) 품질점검단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에 <u>한</u>하여 연임할 수 있고 <u>보궐위원</u>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p> | <p>세대 선정기준은 공동주택의 규모 등 단지 여건에 따라 정한다.</p> <p>제7조(점검결과·조치) ①·② (현행과 같음)</p> <p>③ 사용검사권자는 품질점검단의 점검결과 및 제2항에 따라 사업주체로부터 제출받은 의견을 검토하여 <u>영 제53조의2제1항</u>에 따른 하자의 범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해 사업주체로부터 의견을 제출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사업주체에게 보수·보강 등의 조치를 명해야 한다.</p> <p>제8조(임기) 품질점검단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에 <u>한정</u>하여 연임할 수 있고 <u>새로 위촉된 위원</u>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p> |

관련법령 발췌

□ 주택법 [시행 2021. 10. 21.] [법률 제18317호, 2021. 7. 20., 일부개정]

제48조의3(품질점검단의 설치 및 운영 등) ① 시·도지사는 제48조의2에 따른 사전방문을 실시하고 제49조제1항에 따른 사용검사를 신청하기 전에 공동주택의 품질을 점검하여 사업계획의 내용에 적합한 공동주택이 건설되도록 할 목적으로 주택 관련 분야 등의 전문가로 구성된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이하 “품질점검단”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품질점검단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도시 시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품질점검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및 범위 등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의 건축·구조·안전·품질관리 등에 대한 시공품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점검하여 그 결과를 시·도지사(제1항 후단의 경우에는 대도시 시장을 말한다)와 사용검사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사업주체는 제2항에 따른 품질점검단의 점검에 협조하여야 하며 이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기피 또는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사용검사권자는 품질점검단의 시공품질 점검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주체, 감리자 등 관계자에게 공동주택의 공사현황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및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⑤ 사용검사권자는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점검결과를 제49조제1항에 따른 사용검사가 있는 날부터 2년 이상 보관하여야 하며, 입주자(입주예정자를 포함한다)가 관련 자료의 공개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⑥ 사용검사권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항에 따른 품질점검단의 점검결과에 대한 사업주체의 의견을 청취한 후 하자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보수·보강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하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사용검사를 받기 전까지 조치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 ⑦ 제6항에 따라 보수·보강 등의 조치명령을 받은 사업주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사용검사권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조치명령에 이의가 있는 사업주체는 사용검사권자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 ⑧ 사용검사권자는 공동주택의 시공품질 관리를 위하여 제48조의2에 따라 사업주체에게 통보받은 사전방문 후 조치결과, 제6항 및 제7항에 따른 조치명령, 조치결과, 이의신청 등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품질점검단의 구성 및 운영, 이의신청 절차 및 이의신청에 따른 조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주택법 시행령 [시행 2021. 10. 14.] [대통령령 제32053호, 2021. 10. 14., 일부개정]

제53조의2(사전방문 결과에 대한 조치 등) ① 법 제48조의2제2항에 따른 하자(이하 “하자”라 한다)의 범위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7조 각 호의 구분에 따르며, 하자의 판정기준은 같은 영 제47조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른다.

② 법 제48조의2제2항에 따라 하자에 대한 조치 요청을 받은 사업주체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까지 보수공사 등의 조치를 완료하기 위한 계획(이하 “조치계획”이라 한다)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립하고, 해당 계획에 따라 보수공사 등의 조치를 완료해야 한다.

1. 제4항에 해당하는 중대한 하자인 경우: 사용검사를 받기 전. 다만, 제5항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입주예정자와 협의(공용부분의 경우에는 입주예정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하여 정하는 날로 한다.
2. 그 밖의 하자인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시기. 다만, 제5항의 사유가 있거나 입주예정자와 협의(공용부분의 경우에는 입주

예정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한 경우에는 입주예정자와 협의하여 정하는 날로 한다.

가. 전유부분: 입주예정자에게 인도하기 전

나. 공용부분: 사용검사를 받기 전

③ 조치계획을 수립한 사업주체는 법 제48조의2에 따른 사전방문 기간의 종료일부터 7일 이내에 사용검사권자(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사용검사를 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해당 조치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④ 법 제48조의2제3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하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하자로서 사용검사권자가 중대한 하자라고 인정하는 하자를 말한다.

1. 내력구조부 하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함이 있는 경우로서 공동주택의 구조안전상 심각한 위험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도의 결함이 있는 경우

가. 철근콘크리트 균열

나. 「건축법」 제2조제1항제7호의 주요구조부의 철근 노출

2. 시설공사별 하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함이 있는 경우로서 입주예정자가 공동주택에서 생활하는 데 안전상·기능상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도의 결함이 있는 경우

가. 토목 구조물 등의 균열

나. 옹벽·차도·보도 등의 침하(沈下)

다. 누수, 누전, 가스 누출

라. 가스배관 등의 부식, 배관류의 동파

마.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구·설비 등의 기능이나 작동 불량 또는 파손

1) 급수·급탕·배수·위생·소방·난방·가스 설비 및 전기·조명 기구

2) 발코니 등의 안전 난간 및 승강기

⑤ 법 제48조의2제3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사용검사를 받기 전까지 중대한

하자에 대한 보수공사 등의 조치를 완료하기 어렵다고 사용검사권자로부터 인정받은 사유를 말한다.

1. 공사 여건상 자재, 장비 또는 인력 등의 수급이 곤란한 경우
2. 공정 및 공사의 특성상 사용검사를 받기 전까지 보수공사 등을 하기 곤란한 경우
3. 그 밖에 천재지변이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53조의5(품질점검단의 점검대상 및 점검방법 등) ① 법 제48조의3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및 범위 등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이란 법 제2조제10호다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사업주체가 건설하는 3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을 말한다. 다만, 시·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300세대 미만인 공동주택으로 정할 수 있다.

② 품질점검단은 법 제48조의3제2항에 따라 공동주택 관련 법령, 입주자 모집공고, 설계도서 및 마감자재 목록표 등 관련 자료를 토대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해야 한다.

1. 공동주택의 공용부분
2. 공동주택 일부 세대의 전유부분
3. 제53조의3제2항에 따라 사용검사권자가 하자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품질점검단에 자문을 요청한 사항 중 현장조사가 필요한 사항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품질점검단의 점검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비용추계서 첨부제외 사유서

○ 첨부제외 관련규정

- 충청북도 입법에 관한 조례 제11조(비용추계서 작성대상)제4항 제1호

○ 사 유

- 의안의 개정 내용이 인용조문을 변경하고,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는 것으로서, 의안의 내용이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며 별도의 비용이 발생하지 않아 비용추계서 작성을 생략함.